

춘천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나525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나52546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208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종교단체 B교회

피고, 피항소인 1. C

2. 재단법인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피고 1, 2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지연

3. E

4. F

5. G

6. H

변론 종결 2018. 11. 6.

판결 선고 2018. 12. 18.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20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유지재단'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7. 9. 21. 접수 제89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유지재단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7. 8. 9. 접수 제74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유지재단은 피고 E, F, G, H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1. 2. 20. 접수 제1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 F, G, H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1. 1.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2, 3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혹은 J교회가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부동산을 피고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10행의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 K'을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K'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5행의 '피고 K'을 'K'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지방회 및 'L지방 자산관리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지방회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다는 취지의 결의는 무효이다(원고의 주장을 선택하였다).
- 2) 원고 교회는 교인들의 결의에 따라 폐쇄된 사실도 없고, 비법인사단의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하므로, J교회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지방회나 총회에 귀속되지 않는다.

나. 판단

- 1)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일반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지방회나 'L지방 자산관리위원회'가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능력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청구원인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 2) 을 제2호증의 2, 5, 7, 을 제13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교회가 1991년경 목회자와 소속 교인들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지방회가 2016. 5. 12. '구 J교회 폐쇄 확정을 추인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할 때까지 J교회가 목회자나 교인들이 새로 구성되었다거나, 교회 목적에 부합하는 목회 활동 등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J교회는 1991년경 폐쇄되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지방회가 2016. 5. 12.경 J교회의 폐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지방회는 A종교단체 교단 헌법 제78조 제11항, 제12항에 따라 폐쇄된 J교회가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J교회가 1991년 이후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성지호

판사류하나

판사문지용

별지